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의 성명)	전화번호
	소재지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직인 또는 법인인감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시설명세서 3. 전문인력 보유현황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 사	→	지 정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		시·도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